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	------	--------

〈제 1 문〉

(1) 동네건달 甲은 자신을 잘 따르는 乙, 丙과 함께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마침 야간에 혼자서 핸드백을 들고 공원을 걸어가고 있는 A(여, 70세)를 발견하자 乙과 丙에게 A를 따라가 핸드백을 강취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乙과 丙은 A를 100여 미터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러 乙이 A의 핸드백을 낚아채려 했으나 A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핸드백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5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힘이 빠져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았고, 그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조금 굽히고 왼쪽 어깨 부위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관절 염좌상을 입었다. 한편 丙은 乙 옆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A가 핸드백을 놓자 이를 가지고 乙과 함께 甲에게로 갔다. 핸드백 안에는 현금이 없고 대신 뒷면에 비밀번호가 쓰인 현금카드가 있었는데, 甲은 乙과 丙에게 지시하여 B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A 명의 계좌의 예금잔액 전부를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乙과 丙이 인출해 온 500만 원 중 乙과 丙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자신은 300만 원을 가졌다.

(2) 수사경찰관 丁은 공원에 설치된 CCTV를 조사한 결과 마침 乙과 丙의 범행장면이 찍혀있어 乙과 丙을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甲은 丁에게 자신을 수사대상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고 丁은 이를 받은 다음 甲이 공범임을 알면서도 甲을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甲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戊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甲은 乙, 丙의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범행시각 자신과 함께 있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甲이 乙, 丙의 범행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녹취서를 만들어 丁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1. 사실관계 (1)에서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30점)
2. 사실관계 (2)에서 甲, 丁, 戊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A와의 사이에 A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매도인 A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고, A의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甲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B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甲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에게 경료해주었다.

1. 甲의 A, B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2. 甲의 문서에 관한 죄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제2문의 2〉

甲은 2015. 1. 1. 절도죄를 범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3. 25.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甲이 2015. 5. 1.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할 경우 그 선고시점이 ① 2015. 12. 1.인 경우와 ② 2016. 12. 1.인 경우로 구별하여 중전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와 이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2. 甲이 2017. 6. 1. 범한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